

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경제건설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21.(금)



경제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송창훈

# 목 차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..... 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... 5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 2623호
- 발 의 일: 2025년 2월 3일
- 발 의 자: 박주용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2월 13일

## 2. 제안사유

-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인식 개선과 안전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불법 소각·처리를 최소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고,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 달성군의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기본법」, 「산림보호법」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폐기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

#### 5. 검토의견

-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·줄기·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합니다. 2023년 12월 농촌진흥청-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협업방안을 발표하고, 동절기 산불위험요인 중 하나로 과수 관련 영농부산물을 규정하여 부처 간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1. 산림연접지 100m 이내인 취약지역, 2. 고령층, 취약층의 농경지인 관리지역, 3. 이외 농경지인 일반지역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. 대구시의 경우 군위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.  
   - 시비 1억 5백만 원 지원.

- 해당 사업은 ‘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’, ‘논·밭두렁 태우기 무효성 등 인식개선 교육’, 농기계 무상임대사업의 파쇄기 지원, 수거·파쇄 후 퇴비화를 통한 자연순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
- 달성군의 경우 과수가 관내에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산림연접 재배지가 적어 사업대상지 선정 확률이 낮습니다. 또한, 참외·토마토 등 시설작물이 많은 하빈·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파쇄기 관련 임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, 연평균 약 265회 파쇄기 임대로 영농인은 1회 임차 시 인근 농가도 함께 활용 후 반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  
- 이에, 영농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으로 영농인의 인식개선과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예방 등 군민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※ 참고자료

○ 관내 주요 농산물 현황

- 농가 5,993가구, 농업인구 14,343명
- 경지면적 : 전 2,183ha, 답 5,036ha, 과수원 64ha→ 총 7,283ha

주요 농산물 현황

품목	농가수	재배면적(ha)	생산량(톤)
쌀	2,941	2,746	13,547
마늘	553	280	3,606
양파	272	175	11,067
참외	269	198	7,997
수박	111	176	9,111
토마토	114	58	2,632

○ 파쇄기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

영농부산물 파쇄기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('23~'24)

기종	보유 수(대)	2023년	2024년
덩굴파쇄기(줄기 절단)	4(농업기술센터 3, 하빈 1)	98건	96건
잔가지파쇄기 (잔가지, 고춧대, 뿌리 등)	7(농업기술센터 2, 현풍 2, 하빈 3)	166건	161건
목재파쇄기	1(농업기술센터 1)	3건	5건
계		267건	262건
연평균 실적			265건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 2624호
- 발 의 일: 2025년 2월 3일
- 발 의 자: 서도원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2월 13일

## 2. 제안사유

- 임산부 탑승 차량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 및 주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근거하여,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가정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4~9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  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#### 5. 검토의견

- 2025년 1월 「주차장법」 개정을 통해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배려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,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임산부를 고려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.
- 대구시는 2020년 「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<sup>1)</sup>하였으나 군민이 체감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

---

1) 제5조의3(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, 시가 설치·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,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: 1면 이상  
2.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 100분의 1이상

- 또한, 2015년 기준 달성군 관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이 25면에 불과한 점과 최근 10년간 기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시설의 현황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
  
- 이에 따라, ‘임산부 우선주차구역’ 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하여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·고령화 사회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